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20	게재일	2019.01.20 07:30
제 목	'사람이 좋다' 송해 "뛰어내렸는데 나무에 얹혔다" 과거 자살 시도 [결정적 장면]		
U R L	<a href="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901160601411710&amp;search=title&amp;searchstring=자살">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901160601411710&amp;search=title&amp;searchstring=자살</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뉴스엔의 해당 기사는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 해당 내용을 보도할 때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 용어와 행위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 구체적인 행위묘사 금지와 함께 제목에도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p> <p>2. 위 기사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21	게재일	2019.01.03 18:23
제 목	신재민 자살 소동 '정국 변수될까'		
U R L	<a href="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11">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11</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시사위크의 해당 기사는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 해당 내용을 보도할 때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 용어와 행위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 구체적인 행위묘사 금지와 함께 제목에도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p> <p>2. 위 기사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22	<b>게재일</b>	2019. 01. 07. 15:25
<b>제 목</b>	'동반자살로 호소한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서 유죄...“피해자 진술 합리적”		
<b>U R L</b>	<a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07010003781&amp;ref=search">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07010003781&amp;ref=search</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아시아투데이의 해당 기사는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 해당 내용을 보도할 때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 용어와 행위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 구체적인 행위묘사 금지와 함께 제목에도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p> <p>2. 위 기사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23	<b>게재일</b>	2019. 01. 18. 07:02
<b>제 목</b>	이성미 미혼모 고백, 수면제 자살 시도까지...가수 김학래 반응은?		
<b>U R L</b>	<a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18010011181&amp;ref=search">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18010011181&amp;ref=search</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아시아투데이의 해당 기사는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 해당 내용을 보도할 때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 용어와 행위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 구체적인 행위묘사 금지와 함께 제목에도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p> <p>2. 위 기사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24	게재일	2019. 01. 15. 16:02
제 목	친구 아내 성폭행 30대 항소심 불복해 상고...피해자 부부는 자살		
U R L	<a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15010009082&amp;ref=search">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15010009082&amp;ref=search</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아시아투데이의 해당 기사는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 해당 내용을 보도할 때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 용어와 행위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 구체적인 행위묘사 금지와 함께 제목에도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p> <p>2. 위 기사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27	<b>게재일</b>	2019.01.20 07:30
<b>제 목</b>	'알함브라' 버그는 바로 현빈..게임 리셋위해 자살 선택, 박신혜가 살릴까		
<b>U R L</b>	<a href="http://www.joynews24.com/view/1152481">http://www.joynews24.com/view/1152481</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조이뉴스24의 해당 기사는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 해당 내용을 보도할 때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 용어와 행위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 구체적인 행위묘사 금지와 함께 제목에도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p> <p>2. 위 기사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28	게재일	2019.01.08.11:31
제 목	서강대 자살 "나 떠나야" 의미심장		
U R L	<a href="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336">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336</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코리아데일리의 해당 기사는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 해당 내용을 보도할 때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 용어와 행위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 구체적인 행위묘사 금지와 함께 제목에도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일부 매체는 '자살' 대신 '극단적 선택' 등으로 표현을 완화하고 있다.</p> <p>2. 위 기사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29	<b>게재일</b>	2019.01.17 13:41
<b>제 목</b>	전북도, 한해 1천명 넘게 자살시도, '자살예방심리치유'		
<b>U R L</b>	<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5372">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5372</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프레시안의 해당 기사는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 해당 내용을 보도할 때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 용어와 행위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 구체적인 행위묘사 금지와 함께 제목에도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일부 매체는 '자살' 대신 '극단적 선택' 등으로 표현을 완화하고 있다.</p> <p>2. 위 기사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31	<b>게재일</b>	2019-01-26 14:58
<b>제 목</b>	홍역 추가 확진자 없다...격리해제 32명·격리 6명		
<b>U R L</b>	<a href="http://www.ebn.co.kr/news/view/970343?kind=cate_code&amp;key=EV&amp;shword=&amp;page=&amp;period=_">http://www.ebn.co.kr/news/view/970343?kind=cate_code&amp;key=EV&amp;shword=&amp;page=&amp;period=_</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EBN의 해당 기사는 홍역의 추가 확진자는 현재까지 없으며 격리해제 32명, 격리 6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와 비교해 볼 때 제목과 본문의 리드문장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연합뉴스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27800017?section=search_">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27800017?section=search_</a> (2019-01-26 13:03)</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32	<b>게재일</b>	2019-01-26 16:48
<b>제 목</b>	택시 완전월급제 요구 고공 농성 510일 만에 '해결'		
<b>U R L</b>	<a href="http://www.ebn.co.kr/news/view/970346?kind=cate_code&amp;key=EV&amp;shword=&amp;page=&amp;period=_">http://www.ebn.co.kr/news/view/970346?kind=cate_code&amp;key=EV&amp;shword=&amp;page=&amp;period=_</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EBN의 해당 기사는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망루에서 고공 시위를 벌인 택시 노동자가 510일 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 및 YTN의 기사와 비교해 볼 때 두개 매체의 기사를 부분적으로 발췌해 전체 기사를 구성했으며 이를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ytn.co.kr/_ln/0115_201901261542238306">https://www.ytn.co.kr/_ln/0115_201901261542238306</a> (2019-01-26 15:42)</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25851055?section=search">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25851055?section=search</a> (2019-01-26 12:05)</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33	<b>게재일</b>	2019.01.16 12:07
<b>제 목</b>	中, 작년 경기 살리려 사상최대 신규대출 2천600조원		
<b>U R L</b>	<a href="http://www.fetv.co.kr/news/article.html?no=18944">http://www.fetv.co.kr/news/article.html?no=18944</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FETV의 해당 기사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기 둔화 국면을 맞고 있는 중국에서 작년 한 해 약 2천600조원 규모의 신규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34	게재일	2019.01.24 15:32
제 목	장남에게만 재산 준 노부모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U R L	<a href="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3">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3</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Queen의 해당 기사는 장남인 형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데 양심을 품고 노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스1의 기사와 첫 문장만 제외하곤 그대로 일치한다.</p> <p><a href="http://news1.kr/articles/?3533412">http://news1.kr/articles/?3533412</a> (2019/01/24 14:35)</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35	게재일	2019.01.25 11:38
제 목	가이드 폭행 박종철, 500만달러 '피소' 당할 처지		
U R L	<a href="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96">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96</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Queen의 해당 기사는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박종철 예천군의회에 대해 가이드측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5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스1의 기사와 리드 첫문장만 제외하곤 그대로 일치한다.</p> <p><a href="http://news1.kr/articles/?3533412">http://news1.kr/articles/?3533412</a> (2019/01/25 11:10)</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36	게재일	2019.01.18
제 목	장미인애, 일반인 사업가와 열애 중...'배려+사랑'		
U R L	<a href="https://gotit.co.kr/archives/13736">https://gotit.co.kr/archives/13736</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갯잇코리아의 해당 기사는 배우 장미인애(35)가 일반인 사업가와 목하 열애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는 뉴스1이 단독 보도한 것인데 갯잇코리아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썼다.</p> <p><a href="http://news1.kr/articles/?3528024">http://news1.kr/articles/?3528024</a> (2019/01/18 15:27)</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37	<b>게재일</b>	2019.01.14
<b>제 목</b>	샤오미 정조준! 삼성전자 '갤럭시M' 인도부터 출시...15만원부터 시작?		
<b>U R L</b>	<a href="https://gotit.co.kr/archives/13483">https://gotit.co.kr/archives/13483</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갯잇코리아의 해당 기사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새로운 저가 스마트폰 '갤럭시M' 시리즈를 출시하며 중국업체 샤오미와 본격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스1의 기사를 리드에 한 문장을 추가하고 마지막에 한 문단을 덧붙인 것 외에는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news1.kr/articles/?3523612">http://news1.kr/articles/?3523612</a> (2019/01/14 10:57)</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40	게재일	2019.01.23 17:19
제 목	육아휴직 낸 아빠 47% 늘었다		
U R L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124/7/BBSMSTR_000000010031/view.do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국방일보의 해당 기사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장인이 전년보다 47% 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다.</p> <p>https://www.yna.co.kr/view/AKR20190123061700004?input=1195m (2019/01/23 12:00)</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41	게재일	2019.01.17 18:08
제 목	홍남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U R L	<a href="http://www.newsway.co.kr/news/view?tp=1&amp;ud=2019011718072307803">http://www.newsway.co.kr/news/view?tp=1&amp;ud=2019011718072307803</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뉴스웨이의 해당 기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17087852002?section=search">https://www.yna.co.kr/view/AKR20190117087852002?section=search</a> (2019-01-17 17:54)</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42	게재일	2019.01.18 15:33
제 목	국민연금 경영권 참여까지 최대 3년 걸린다...횡령·배임 등 중점관리		
U R L	<a href="http://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6">http://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6</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더퍼블릭의 해당 기사는 불법·비리와 갑질 사태에 휩싸인 대한항공이 국민연금의 사상 첫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향후 횡령·배임 등에 휩싸인 기업이라도 경영권 행사까진 최대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 기사와 일치한다.</p> <p><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8_0000534218&amp;cID=10899&amp;pID=108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8_0000534218&amp;cID=10899&amp;pID=10800</a> (2019-01-18 14:34)</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44	게재일	2019-01-12 14:08:02
제 목	수출 전선 '빨간불' 지난해 比 7.5% 감소...승용차·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		
U R L	<a href="http://www.dailymagazine.co.kr/news/contents.php?idxno=3380">http://www.dailymagazine.co.kr/news/contents.php?idxno=3380</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데일리매거진의 해당 기사는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첫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을 볼 때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111035052002?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1901111035052002?input=1195m</a> (2019/01/11 09:38)</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45	게재일	2019-01-21 10:29
제 목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한진그룹의 신뢰회복 위한 5 개년 계획" 공개 제안		
U R L	<a href="http://www.dailymagazine.co.kr/news/contents.php?idxno=33920">http://www.dailymagazine.co.kr/news/contents.php?idxno=33920</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데일리매거진의 해당 기사는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에 경영 효율성, 리스크 관리, 대외 이미지 하락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룹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위한 지배구조위원회 설치, 적자사업 재검토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을 볼 때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46	<b>게재일</b>	2019.01.03 09:40
<b>제 목</b>	애플,1분기 실적 전망치 하락에 주가 7% 급락...증시에 충격 예상		
<b>U R L</b>	<a href="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72">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72</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서울이코노미뉴스의 해당 기사는 애플이 2일(현지시간) 팀 쿡 최고경영자(CEO) 명의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2019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전망치(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을 볼 때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03028100075?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190103028100075?input=1195m</a> (2019-01-03 08:42)</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47	<b>게재일</b>	2019.01.03 10:40
<b>제 목</b>	"경기 불안할땐 금이 최고" 금값 반년만에 최고치		
<b>U R L</b>	<a href="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75">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75</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서울이코노미뉴스의 해당 기사는 주식이나 원유와 같은 글로벌 투자 자산의 불안 속에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을 볼 때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출처 표시없이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03040200009?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190103040200009?input=1195m</a> (2019-01-03 09:45)</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48	<b>게재일</b>	2019-01-10 08:53:16
<b>제 목</b>	"현장 가까이서 소통"...이낙연 총리, 새해 경제 속으로		
<b>U R L</b>	<a href="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0782414872">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0782414872</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세계로컬신문의 해당 기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9년 새해를 맞아 삼성전자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경제계와의 소통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총리실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팩트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 같은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49	<b>게재일</b>	2019-01-16 14:32
<b>제 목</b>	심하다 vs 당당...‘카밀라’ 한초임 노출패션 ‘도마 위’		
<b>U R L</b>	<a href="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91141804332">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91141804332</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세계로컬뉴스의 해당 기사는 그룹 ‘카밀라’ 한초임이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에 입고 나온 의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 기사와 한문장을 제외하고 일치한다.</p> <p><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6_0000531808&amp;cID=10601&amp;pID=106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6_0000531808&amp;cID=10601&amp;pID=10600</a> (2019/01/16 14:14)</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50	<b>게재일</b>	2019.01.14 11:33
<b>제 목</b>	시흥시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10명 RSV 확진		
<b>U R L</b>	<a href="http://www.sobijagobalnews.com/3587">http://www.sobijagobalnews.com/3587</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소비자고발뉴스의 해당 기사는 경기 시흥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10명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14일 알려졌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 기사와 일치한다. 뉴시스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4_0000529063">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4_0000529063</a> (2019-01-14 11:09)</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52	게재일	2019.01.14 11:51
제 목	안락사 논란, 소수의 안락사 불가피?		
U R L	<a href="http://www.sobijagobalnews.com/3589">http://www.sobijagobalnews.com/3589</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소비자고발뉴스의 해당 기사는 동물들을 안락사시켜왔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 측에 후원 중단 전화 및 메일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의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전재했다.</p> <p><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4_0000529024&amp;cID=10201&amp;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4_0000529024&amp;cID=10201&amp;pID=10200#</a> (2019-01-14 11:40)</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53	게재일	2019.01.17 17:46
제 목	캄보디아 봉사활동 중 숨진 건양대생 시신 국내 도착		
U R L	<a href="http://www.star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64">http://www.star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64</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스타트뉴스의 해당 기사는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숨진 건양대 학생 2명의 시신이 17일 대전 건양대병원에 안치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전재했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17090800063?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190117090800063?input=1195m</a> (2019/01/17 13:28)</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55	게재일	2019.01.24 18:58
제 목	축구 스타 살라 비행기 사고 실종...음성메시지 "너무 무섭다"		
U R L	<a href="http://www.sisa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8">http://www.sisa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8</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시사플러스의 해당 기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카디프 시티로 이적한 축구 스타 에밀리아노 살라가 비행기 사고로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인터풋볼과 KBS의 기사와 일치한다. 전체 5개 문단 가운데 첫번째와 마지막 문단은 KBS에서, 2~4번째 문단은 인터풋볼 기사에서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interfootball.heraldcorp.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290">http://interfootball.heraldcorp.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290</a> (2019/01/24 17:43)</p> <p><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2552&amp;ref=A">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2552&amp;ref=A</a> (2019/01/24 07:31)</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56	게재일	2019.01.22 16:07
제 목	신주쿠 노래방서 총격...한국인 조폭 남성 1명 사망		
U R L	<a href="http://www.sisa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7">http://www.sisa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7</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시사플러스의 해당 기사는 일본 도쿄(東京)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국 국적의 남성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 조선일보의 기사와 일치한다. 전체 7개 문단 가운데 1~3번째 문단은 뉴시스 기사를, 4~7번째 문단은 조선일보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2_0000537495&amp;cID=10101&amp;pID=101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2_0000537495&amp;cID=10101&amp;pID=10100</a> (2019/01/22 15:44)</p> <p><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2/2019012201673.html?utm_source=naver&amp;utm_medium=original&amp;utm_campaign=news">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2/2019012201673.html?utm_source=naver&amp;utm_medium=original&amp;utm_campaign=news</a> (2019/01/22 15:31)</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59	<b>게재일</b>	2019.01.22 13:19
<b>제 목</b>	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처분 '집행정지'..."회계 위법 단정 어렵다"		
<b>U R L</b>	<a href="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580">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580</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아시아타임즈의 해당 기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제재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올 1월 22일 정지시켰으며, 그 사유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선위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내용을 전하고 있다. 첫 문단을 제외한 기사 전체가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와 일치한다. 연합뉴스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18122751004?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190118122751004?input=1195m</a> (2019-01-22 12:04)</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인정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61	<b>게재일</b>	2019.01.26. 17:37
<b>제 목</b>	러시아 "북미 2차정상회담 환영...비핵화 해결 기대"		
<b>U R L</b>	<a href="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11743">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11743</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에너지경제의 해당 기사는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의 북핵담당 관리들을 만난 뒤 "러시아는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대화를 계속하려는 미국과 북한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연합뉴스 기사를 리드 부분만 손질해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33100009?input=1195mm">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33100009?input=1195mm</a> (2019/01/26 15:22)</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62	<b>게재일</b>	2019.01.21.21:29
<b>제 목</b>	메이 '브렉시트 대안' 곧 제시...보수당·연정파트너 설득 초점		
<b>U R L</b>	<a href="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10781">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10781</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에너지경제의 해당 기사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플랜 B'를 제시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벌인 초당파적인 협상에서는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연합뉴스 기사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나누는 등 손질해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63	<b>게재일</b>	2019/01/24 07:30
<b>제 목</b>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드디어 구속되다...헌정 사상 초유		
<b>U R L</b>	<a href="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9144&amp;section=sc44&amp;section2=">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9144&amp;section=sc44&amp;section2=</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여원뉴스의 해당 기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23176451004?section=search">https://www.yna.co.kr/view/AKR20190123176451004?section=search</a> (2019/01/24 02:42)</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64	<b>게재일</b>	2019/01/26 00:00
<b>제 목</b>	대한민국 카타르에 1대0 패배. 아시안컵 아쉬운 컵으로 끝났다		
<b>U R L</b>	<a href="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9166#09J9">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9166#09J9</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여원뉴스의 해당 기사는 한국 축구가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중동의 복병' 카타르의 벽에 59년 만의 우승 꿈을 접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연합뉴스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083051007?section=sports/football">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083051007?section=sports/football</a> (2019-01-26 00:14)</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67	<b>게재일</b>	2019/01/26 11:36
<b>제 목</b>	韓・日 갈등에도 한국 찾은 일본인 관광객, 9년만에 최대폭 증가		
<b>U R L</b>	<a href="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9172&amp;section=sc44">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9172&amp;section=sc44</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여원뉴스의 해당 기사는 지난해 역사 인식 차이 등으로 한국·일본 양국 정부 간 갈등이 이어졌지만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166900002?section=search">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166900002?section=search</a> (2019-01-26 09:03)</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68	<b>게재일</b>	2019.01.22 15:50
<b>제 목</b>	도쿄 도심 노래방서 총격사건으로 한국인 1명 사망'		
<b>U R L</b>	<a href="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39">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39</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위클리오늘의 해당 기사는 일본 도쿄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국 국적의 남성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의 기사와 거의 일치한다. 뉴시스 기사를 두번째 문단만 부분 손질해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www.news1.com/view/?id=NISX20190122_0000537495&amp;cID=10101&amp;pID=10100">http://www.news1.com/view/?id=NISX20190122_0000537495&amp;cID=10101&amp;pID=10100</a> (2019/01/22 15:44)</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70	<b>게재일</b>	2019.01.19 13:16
<b>제 목</b>	여야, 손혜원 난타전..."권력형 게이트" VS "대단한 상상력"		
<b>U R L</b>	<a href="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5722">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5722</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위키리크스한국의 해당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여야가 주말에도 난타전을 벌였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와 거의 일치한다. 연합뉴스 기사를 뒷 부분만 빼고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19027700001?section=politics/national-assembly#">https://www.yna.co.kr/view/AKR20190119027700001?section=politics/national-assembly#</a></p> <p>2019-01-19 12:02</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71	게재일	2019.01.26 15:57
제 목	'셋다운 사태' 트럼프, 평균 국정지지도 38%... 美국민 53% "대통령 책임"		
U R L	<a href="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305">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305</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위키리크스한국의 해당 기사는 미국 연방정부의 셋다운 사태로 트럼프대통령의 평균 국정운영지지도가 38%로 떨어졌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연합뉴스 기사를 일부 자구만 손질해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20000009?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20000009?input=1195m</a> (2019-01-26 09:28)</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72	<b>게재일</b>	2019.01.17 14:13
<b>제 목</b>	경찰, 황창규 KT 회장 '불법 정치자금' 혐의 검찰 송치		
<b>U R L</b>	<a href="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90">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90</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이지경제의 해당 기사는 황창규 KT 회장이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뉴시스 기사를 일부 문구만 손질해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7_0000533011&amp;cID=10201&amp;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7_0000533011&amp;cID=10201&amp;pID=10200</a> (2019-01-17 12:00:00)</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73	<b>게재일</b>	2019.01.18 14:33
<b>제 목</b>	가산동 땅꺼짐 사고, 공사 관계자 등 9명 검찰 송치		
<b>U R L</b>	<a href="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07">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07</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이지경제의 해당 기사는 경찰이 지난해 8월 벌어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 인근 공사장 시공사 관계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의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뉴시스 기사를 일부 문구만 손질해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8_0000533981&amp;cID=10201&amp;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8_0000533981&amp;cID=10201&amp;pID=10200</a> (2019-01-18 10:53)</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b>심의번호</b>	INC-190207-174	<b>게재일</b>	2019/01/18 [09:46]
<b>제 목</b>	미국 생산 증가 부담에 국제유가 사흘 만에 하락		
<b>U R L</b>	<a href="http://www.economicpost.co.kr/14021">http://www.economicpost.co.kr/14021</a>		
<b>주 문</b>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b>이 유</b>	<p>1. 이코노믹포스트의 해당 기사는 미국의 생산 증가 부담에 국제 유가가 사흘만에 하락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뉴시스 기사를 일부 문구만 손질해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8_0000533739">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8_0000533739</a> (2019-01-18 07:25:23)</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b>적용조항</b>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75	게재일	2019.01.22 16:16
제 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숨 돌렸다		
U R L	<a href="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944">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944</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일간투데이의 해당 기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제재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올 1월 22일 정지시켰으며, 그 사유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선위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연합뉴스 기사 17개 문단 중 14개 문단을 가져와 문단 나누기를 달리하고, 문장을 약간 고쳐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118122751004?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190118122751004?input=1195m</a> (2019-01-22 12:04)</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76	게재일	2019.01.18 18:18
제 목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9개월째 입주 지연...입주예정자 '눈물'		
U R L	<a href="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8">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8</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일요경제의 해당 기사는 대명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울산시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가 공사 지연으로 준공과 입주가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연합뉴스 기사를 일부 문구 등을 손질해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07-178	게재일	2019.01.13 10:39
제 목	의성 황토방서 40대 부부 숨진채 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U R L	<a href="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479">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479</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권고'로 결정한다.		
이 유	<p>1. 한강타임즈의 해당 기사는 경북 의성의 한 황토방에서 40대 부부가 숨진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표현이 같은 사안을 앞서 보도한 뉴시스 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뉴시스 기사를 일부 자구만 손질해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본다.</p> <p><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3_0000528303&amp;cID=10899&amp;pID=108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3_0000528303&amp;cID=10899&amp;pID=10800</a> (2019/01/13 09:49)</p> <p>2. 위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표절금지)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 (표절금지)		
<p><b>2019년 2월 7일</b></p> <p><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p> <p><b>위원장 이민규</b></p> <p><b>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b></p>			